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의견

2019.3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고 김용균의 죽음과 이후 투쟁의 결과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이 지난 연말 가까스로 통과됐다. 이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안이 곧 행정부로부터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여전히 아쉬운 점이 많다. 근본적으로 이 법은 여전히 노동자를 일터 환경과 업무 방식에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건강권의 주체로 보기보다, ‘보호’와 ‘지도’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 제기하고 얻어내야 할 과제가 있다고 판단한다. 법의 보호 대상 확대와 원청 책임 강화라는 법의 개정 취지가 하위법령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노동자 참여 강화와 산재 은폐 줄이기 등 지난 수년간 행정규칙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던 사안을 개정시키는 것이다.

법안 모든 조항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것은 우리로서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불필요하기도 하다. 연구소가 그 동안 직접 활동하고 투쟁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개정 의견을 제시한다. 앞으로 노동조합이나 노동안전보건단체들과의 공동 활동을 통해 더 넓은 범위의 주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는 다음의 5가지 주제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이 중 세 가지는 이번 법 개정 과정에서 새로이 도입된 법 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제안이며, 두 가지는 이전부터 제기되던 주제인데 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과정에서 반드시 다뤄지길 바라는 주제이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 확대 및 적용 제외 폐지
2. 도급 금지 및 승인
3. 작업중지권
4. 노동자 참여 중 위험성 평가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5. 산재 보고와 재발 방지 계획 비치

1.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 확대 및 적용 제외 폐지

1) 적용 제외 규정 삭제

법률	시행령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p>제2조의2(적용범위 등) ①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범위 및 해당 사업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 규정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 8. 6.></p> <p>② 이 영에서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p>

법 3조에서 밝히고 있듯이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임. 그동안 시행령이 오랫동안 법률의 원칙을 훼손해 왔음. 시행령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제외 규정을 삭제해야 함.

가. 규모에 따른 적용 제외 규정 폐지 필요성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제외는 업종 및 규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문제는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기초를 이루기 때문에 영세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보호수준이 그렇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보다 낮을 수 있다는 설명이 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전형배, 2018, 중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법제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 또, 산재가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어, 오히려 더 위험하고 열악한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산업안전보건 관리감독으로부터 소외되는 역진적 결과를 낳음.
- 영세한 사업주에게는 적용 제외가 아니라, 안전보건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과 감독이 필요함.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 이행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 근로자 건강센터 등 공공기관에서 대행, 위탁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공적 영역의 산업안전보건서비스를 강화하도록 보완이 필요함.

나. 중복 규제 회피 조항 폐지 필요성

- 「광산안전법」, 「원자력안전법」, 「항공안전법」, 「선박안전법」 적용 대상을 제외하는 것은 중복 규제 회피를 위한 것이라고 하나, 실제로 노동자 건강 문제의 사각지대 발생
- 예를 들어, 선박안전법의 안전교육은 ‘위험물 안전운송 교육’이며, 원자력안전법의 안전교육은 방사선장해방지와 관련된 교육으로 제한됨. 해당 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의 경우에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특별한 중복되는 조항에 대해서만, 해당 규정에서 따로 제외하는 것이 맞음.

다. 업종에 따른 적용 제외 조항 폐지 필요성

- 사무직 노동자만 사용하는 경우,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제3장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모두 적용 제외하는 것은 과도함.
- 이는 보건보다 안전 중심, 정신적·사회적 건강보다 신체적 건강 중심으로 고민하던 30년 전의 산업안전보건 패러다임에 따른 조항임.
- 사무직 노동자들의 경우 혹은 공공행정 노동자의 경우에도 장시간 노동, 일터괴롭힘, 감정노동, 근골격계질환 등 다양한 노동안전보건문제에 노출되며, 당연히 이 문제들을 다루기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안전보건체계가 필요함.
- 교육 서비스업(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은 제외한다)의 경우 교사 건강,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건강 등 다양한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으며, 이를 다루기 위한 체계가 필요함.
- 국제 및 외국기관의 경우에도 국내에서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적용하는 것이 맞음. 국방과 같은 경우에도 특별한 이유에 따라 제외해야 할 항목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서 따로 제외하는 것이 맞음.

2) 특수고용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범위 및 안전조치, 보건조치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p>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p> <p>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할 것</p> <p>2.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p> <p>3.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p> <p>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p> <p>③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증진에 사용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법 77조 1항 1호에서 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은 표준직업분류의 모든 직종을 뜻한다.</p> <p>법 77조 1항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는 법 38조와 39조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준한다.</p>

- 특수고용노동자의 적용대상은 직종 중심을 넘어서야 함. 현행 산재보험 적용대상 직종으로 제한하는 대신, 법 77조 2조와 3조에 나와 있는 조건에 해당하는 일하는 사람은 모두 포괄하도록 해야 함. 즉, 1인 자영업자(3조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가운데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자 전체로 하면 됨. 이렇게 할 경우 특고노동자가 대부분 포함될 수 있음.
- 직종을 제한하게 될 경우 간병인, 미용사, 방송작가, 장례식 도우미, 관광통역사 등 매우 다양한 형태의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모두 해당이 어렵게 됨.
-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유사한 형

태의 업무 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다 더 특수한 형태의 근로종사자들이 확산 될 것이라는 예측이 확산되고 있으므로, 특정 직종으로 제한하는 접근은 적절하지 않음.

- 또, 특고노동자 역시 폭넓은 안전 및 보건조치를 보장받아야 함. 예를 들어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는 판단될 경우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특고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부담되지 않도록 해야 함. 작업환경측정이나 건강검진 등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다른 노동자와 동일하게 특고 노동자들에게 제공되어야 함.

3)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법률	시행령
<p>제78조(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는 그 중개를 통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로 물건을 수거·배달 등을 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p>	<p>법 78조의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는 법 38조와 39조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준한다.</p>

- 배달종사자의 안전조치 역시 폭넓은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로 규정돼야 함. 위험 작업 시 작업 중지권 등의 안전조치 외에도 옥외 작업에서 비롯되는 다양한 건강 문제 예방 조치나 근골격계질환 예방 조치, 직무스트레스 예방 조치 등의 보건조치도 필요함. 필요하다면 작업환경측정이나 건강검진도 제공돼야 함.
- 배달종사자에게 취해야 할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법 38,39조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로 정해두고 필요한 경우 충분한 안전조치, 보건조치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함.

4) 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p>법 제79조(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맹본부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의 설비나 기계, 원자재 또는 상품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 가맹점사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맹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의 마련·시행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설치하거나 공급하는 설비·기계 및 원자재 또는 상품 등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의 제공 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의 내용·시행방법,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의 제공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p><시행령> 법 79조 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맹본부란 업종에 관계 없이, 가맹점 사업자 수가 50개 소 이상의 가맹본부를 뜻한다.</p> <p><시행규칙> 법 79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가맹점 순회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가맹점주와 가맹본부의 합동 안전·보건점검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교육 위험성 평가 및 작업환경측정 지원 가맹점 노동자의 안전보건상 고충 신고 체계 운영 <p><시행규칙> 법 79조 제1항제2호에 따라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설비·기계 및 원자재 또는 상품 등을 해당 가맹점에 설치하거나 공급하기 전까지 가맹점주 및 가맹점 노동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그 유해성·위험성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이나 기계·기구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 법률 79조에 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 조항이 신설되었음.
-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안전에 대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 현행 법률의 도급사업주가 시행해야 할 안전보건조치 내용은 포함돼야 함. 또, 산업안전보건법 상 가맹점주가 가져야 할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가맹본부가 지원하는 역할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 또, 가맹점의 노동자(근로자)가 안전보건 상의 고충이 존재할 경우 가맹본부에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가맹점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고려하도록 함. 또 안전보건 정보를 가맹점주 및 가맹점 노동자에게 제공한다는 조항을 두어 가맹점 노동자의 기본적인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함.
- 가맹본부의 종류를 업종으로 제한하는 것 역시 가맹점 형식의 사업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 할 가능성이 높음. 2016년 통계로도 가맹점 수가 1만개가 넘는 편의점, 한식, 치킨, 커피전문점, 주점, 피자·햄버거 외에도 제빵·제과, 분식·김밥, 치킨, 자동차수리, 두발미용, 가정용세탁 등 다양한 산업의 프랜차이즈가 있으며 가맹점 수는 총 19만 개가 넘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 마련 정도는 전 업종의 가맹본부가 수행할 수 있는 범위의 역할임.
- 가맹점 숫자 등을 기준으로 할 때, 법을 적용받는 가맹본부의 숫자가 지나치게 적을 수 있음. 예를 들어 가맹점 수 1,000개소 이상의 가맹본부만을 대상으로 하면 네네치킨, 교촌치킨, 던킨도너츠, 버거킹 등의 가맹본부는 모두 해당이 안 되게 됨. 기본적으로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는 법 전체의 취지를 고려하여, 가맹점 수가 50개소가 넘는 가맹본부는 모두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안함. (맥도날드 가맹점 128개, 버거킹 가맹점 72개)

2. 도급 금지 및 승인

1) 도급인의 사업장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p>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p> <p>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이하 "산업재해발생건수 등"이라 한다)을 공표하여야 한다.</p> <p>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도급인의 사업장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 등에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 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p> <p>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산업재해발생건수 등을 공표하기 위하여 도급인에게 관계수급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p>	<p><시행령> 법 10조 2항의 도급인의 사업장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토사·건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2.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3.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4. 비계 또는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 5. 건설용 리프트를 운행하는 장소 6. 지반을 굴착하거나 발파작업을 하는 장소 7. 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8.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급금지 작업을 하는 장소 9. 화재·폭발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작업을 하는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선박 내부에서의 용접·용단작업 나. 안전보건규칙 제273조에 따른 특수화학설비에서의 용접·용단작업 다. 안전보건규칙 제225조제4호에 따른 인화성 물질을 취급·저장하는 설비 및 용기에서의 용접·용단작업 라. 가연물(可燃物)이 있는 곳에서의 용접·용단 및 금속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연삭숫돌에 의한 건식연마작업 등 불꽃이 될 우려가 있는 작업 10. 안전보건규칙 제618조제1호에 따른

	<p>밀폐공간으로 되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장소</p> <p>11.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파쇄 또는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p> <p>12. 안전보건규칙 별표 1에 따른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장소</p> <p>13.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7호에 따른 유기화합물취급 특별 장소</p> <p>14. 공중 전선에 가까운 장소로서 시설물의 설치·해체·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을 할 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p> <p>15.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p> <p>16. 동력 기계·기구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장소</p> <p>17. 안전보건규칙 별표 7에 따른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대한 정비·보수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p> <p>18. 안전보건규칙 제574조 각 호에 따른 방사선 업무를 하는 장소</p> <p>19.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또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p> <p>20.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p> <p>21. 안전보건규칙 제132조에 따른 양중기(揚重機)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狹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p> <p>22.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차량을 포함한다)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p> <p>23. 고객으로 인한 건강장해 위험 장소</p>
--	--

- 이번 법 개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 중 하나인 원청 책임 강화와 관련되어 새로 들어온 개념이 ‘도급인의 사업장’임. 그런데 이 정의는 법 10조 2항에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포함한다”고 규정돼 있음.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도급사업시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서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로 변경되게 됨.(개정 법 제64조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 따라서 원청(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책임 강화라는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도급인의 사업장은 현행의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보다 넓은 범위를 포괄할 수 있어야 함. 또, 여러 언론에서 지적한 것처럼 현행의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고 김용균이 일하던 현장은 포함되지 못 함.
- 따라서, 도급인의 사업장 범위를 ‘동력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와 ‘고객으로 인한 건강장해 위험 장소’를 포함하도록 해, 다양한 위험이 있는 하청 현장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를 꾀함.

2) 산업재해 발생 건수 통합 공표 사업장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p>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p> <p>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이하 "산업재해발생건수 등"이라 한다)을 공표하여야 한다.</p> <p>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에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p> <p>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산업재해발생건수 등을 공표하기 위하여 도급인에게 관계수급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p>	<p><시행령> 법 10조 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도급인이 사용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서 도급인 사업장의 사고사망만인율(질병으로 인한 사망재해자를 제외하고 산출한 사망만인율을 말한다) 보다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수급인[하수급인(下受給人)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출한 통합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은 사업장을 말한다.</p> <p>1. 제조업</p> <p>2. 철도운송업</p> <p>3. 도시철도운송업</p>

- 산업재해 발생 건수 통합 공표 역시 마찬가지로 임. 원청 노동자보다 하청 노동자의 사망만인율이 높은 사업장이라고 규정하면 충분함. 현행 제조업, 철도운송업, 도시철도운송업으로 제한하여 규정하다보니, 재해율이 높은 발전업(D.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내 세분류),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E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내 중분류) 등이 포함되지 못 하는 문제가 생김.
- 또 이 부분에서도 '도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수급인' 범위를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수급인'으로 넓혀야 함.

3) 도급의 승인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p>제59조(도급의 승인) ①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승인에 관하여는 제58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시행령 및 시행규칙</p> <p>법 59조 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변이원성(變異原性), 흡입독성, 생식독성(生殖毒性), 발암성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 발생이 의심되는 화학 물질을 사용하는 작업 2. 잠함, 잠수작업 등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 3. 갱내에서 하는 작업 4. 라듐방사선이나 엑스선, 그 밖의 유해 방사선을 취급하는 작업 5. 중대재해가 발생했던 작업 6. 야간 작업 7. 그 밖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작업

- 이번 법 개정에서 유해작업 도급 금지가 시행령에서 법으로 승격되고, 도급 승인 조항이 신설되었음. 개정 법 59조 도급의 승인 조항은 단순히 화학물질 사용하는 작업의 도급 승인에 대한 조항이 아니라,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이 있는 작업’에 대한 도급 승인 규정으로 보아야 함. 법률에 등장한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은 예시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입법 취지라고 생각됨.
- 따라서 도급의 승인 규정을 화학물질 그것도 급성 독성과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화학물질 취급 작업으로 좁히지 않는 것이 필요함.
- 노동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 상당히 우려되는 작업이나, 중대재해가 발생했던 작업 등은 모두 도급 승인을 받도록 할 것을 제안함. 도급의 금지가 아니므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됨.

3. 작업중지권

1) 중대재해 발생시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 중지

-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등 발생 시 작업중지 명령·해제 운영기준>(이하 ‘고용노동부 작업중지 기준’이라고 함)을 두어, 작업중지 명령 기준과 해제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고용노동부 작업중지 기준’은 작업중지의 적용 대상을 “① 중대재해(현행법 시행규칙 제2조) 및 ②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였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필요성을 인정하여 지정한 사고”라고 하였음.
- 그러나 개정법에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만 작업중지 조치가 가능하다고 명시적으로 정하므로, 현행법의 고용노동부 작업중지 기준 ②항에서 정하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였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필요성을 인정하여 지정한 사고’의 경우에도 작업중지 명령을 행사하기 어려운 형국이 되었음.
- 이는 기존보다 오히려 작업중지 명령을 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축소된 것으로, 향후 개정 논의가 반드시 필요한 지점임.
- 이런 한계를 감안하고도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 장관이 작업중지를 할 수 있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이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에 관한 판단기준이 보다 구체화 되어야 함.
- 현행법 운영기준은 ‘사업장 내 타 장소에서 재해발생 작업과 동종 유사작업이 행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이거나, 재해발생 과정에서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위반이 판단되어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관리 수준이 미흡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야 함.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p>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p> <p>1.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p> <p>2.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p> <p>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토사·건축물의 붕괴, 화재·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으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p>	<p>시행령 (동일한 작업의 범위) 법 55조 1항 1호의 ‘동일한 작업’이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p>1. 같은 종류의 유해·위험 요인이 있는 작업</p> <p>2. 재해발생 작업과 동종 유사작업</p>

<p>하여 그 재해가 발생한 장소 주변으로 산업재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p>	
<p>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작업중지 해제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를 해제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 해제의 요청 절차 및 방법,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p>	<p>시행규칙 (작업중지해제심의위원회) ① 법55조3항에 따라 사업주의 작업중지 해제 요청에 대해 심의할 심의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p> <p>1. '(지)청장 2. 산재예방지도과장·담당감독관·안전보건공단 팀장급 이상 직원 3. 사고와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전문가 2인 이상 참여하되 적어도 1명은 노조 추천</p> <p>② 작업중지해제심의위원회는 전원의 동의로 운영한다.</p>

- 또, 작업중지 명령 해제에 관해 작업중지해제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 현행 운영기준은 구성이 (지)청장과 산재예방지도과장·담당감독관·안전보건공단 팀장급 이상 직원과 사고와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전문가가 1인 이상 참여하여 만장일치로 운영되고 있음. 이에 대해 독립성을 보강하고 노동자 및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전문가 2인 이상 참여하되 적어도 1명은 노조 추천'으로 시행규칙 상에 규정할 것을 제안
- 더불어, 운영 규정 상에 안전작업계획을 수립하여 노동청에 제출하기 전이나 작업중지 해제를 요청하면서 사업주가 노동자의 의사를 확인하는데 있어서,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 노동조합과의 논의를 거치도록 하고,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집단적 동의 방식을 갖기 위한 절차를 새로 만들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현장확인, 작업중지 해제 여부 결정, 안정작업 이행상황 보고의 전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절차와 방식이 필요함.

4. 노동자 참여 중 위험성 평가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관련 규정은 이번 법 개정에서는 변화가 없었음. 그러나 그 동안 노동자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권한을 확대하라는 요구는 지속적이었음.
- 사외(지역) 명산관의 경우 사업장 명산관에 비해 권한이 적었는데, 이 권한 제한을 줄이고, 사업장 출입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함.
- 또,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자대표가 없는 경우에는 사외(지역) 명산관이 사업장 명산관이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실질적인 의미를 갖도록 함.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p>제2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p> <p>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p> <p>③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방법, 업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시행령> (명예감독관 위촉 대상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1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명예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 설치 대상 사업의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사람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에 따른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가 추천하는 사람 3. 전국 규모의 사업주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4. 산업재해 예방 관련 업무를 하는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p>② <u>명예감독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항 제1호에 따라 위촉된 명예감독관의 업무 범위는 해당 사업</u></p>

장에서 의무로 한정하되,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명예감독관의 업무 범위는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로 한정한다. 단, 100인 미만 사업장이고, 근로자 대표가 없을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업무를 함께 할 수 있다.

1. 사업장에서 하는 자체점검 참여 및 근로감독관이 하는 사업장 감독 참여
2.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참여 및 사업장에서 하는 기계·기구 자체검사 입회
3. 작업환경측정, 근로자 건강진단 시의 입회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
4.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 및 감독기관에의 신고
5.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
6. 직업성 질환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여럿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실시 요청
7.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
8. 법령 및 산업재해 예방정책 개선 건의
9. 안전·보건 의식을 복돋우기 위한 활동과 무재해운동 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
10.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홍보·계몽 등 산업재해 예방업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③ 사업주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업장 출입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신설>

④ 명예감독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명예감독관의 활동

	<p>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명예감독관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p>
--	---

- 더불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에서도 ‘사업장 외 명예감독관이 해당 사업장을 출입하도록 하는 사유’에 중대재해 발생,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제보를 받은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지역협의회에 신고한 때를 추가하고, 근로감독관이 하는 사업장 감독에 사업장의 명예감독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또 운영규정에서 명산관 협의회를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소집하도록 하는 것을 제안

2) 위험성 평가

- 법 개정 과정에서 위험성 평가에 해당 작업장 노동자를 참여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됨. 이에 따라 위험성 평가 지침을 개정하여 노동자 참여의 구체적 방법을 제시해야 함. 가장 실질적으로 위험성 평가에 참여하거나 위험성 평가 참여를 위해 필요한 교육에 소요된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하는 안을 구체적으로 명시.
- 더불어,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에서, 위험성 평가 종료 후 남아 있는 유해·위험 요인에 대해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에게 알려야 한다고 명시하여, 남아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더 줄이기 위해 노동자가 집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p>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 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p> <p>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현행> 사업장 위험성 평가 지침	<개정 제안>
<p>제5조(위험성평가의 방법) ①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에게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게 할 것 2.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이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지도·조언하게 할 것 3. 관리감독자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시행하게 할 것 4.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거나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를 참여하게 할 것 5. 기계·기구, 설비 등과 관련된 위험성평가에는 해당 기계·기구, 설비 등에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을 참여하게 할 것 6. 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사람을 지정하는 등 그 밖에 위험성평가를 위한 체제를 구축할 것 <p>② 사업주는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자에 대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험성평가에 대해 외부에서 교육을 받았거나, 관련학문을 전공하여 관련 지식이 풍부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을 생략할 수 있다.</p> <p>③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p>	<p>제5조(위험성평가의 방법) ①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에게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게 할 것 2.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이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지도·조언하게 할 것 3. 관리감독자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시행하게 할 것 4. 기계·기구, 설비 등과 관련된 위험성평가에는 해당 기계·기구, 설비 등에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을 참여하게 할 것 5. 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사람을 지정하는 등 그 밖에 위험성평가를 위한 체제를 구축할 것 <p>② 사업주는 위험성평가에 근로자 대표 또는 당해 작업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신설)</p> <p>③ 사업주는 제1, 2항에서 정하고 있는 자에 대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험성평가에 대해 외부에서 교육을 받았거나, 관련학문을 전공하여 관련 지식이 풍부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을 생략할 수 있다.</p> <p>④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 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p>

<p>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p> <p>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도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 고시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험성평가 방법을 적용한 안전·보건진단(법 제49조) 2. 공정안전보고서(법 제49조의2). 다만,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중 공정위험성 평가서가 최대 4년 범위 이내에서 정기적으로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3.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안전보건규칙 제657조부터 제662조까지) 4. 그 밖에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위험성평가 관련 제도 	<p>⑤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도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 고시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험성평가 방법을 적용한 안전·보건진단(법 제49조) 2. 공정안전보고서(법 제49조의2). 다만,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중 공정위험성 평가서가 최대 4년 범위 이내에서 정기적으로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3.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안전보건규칙 제657조부터 제662조까지) 4. 그 밖에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위험성평가 관련 제도 <p>⑥ 사업주는 근로자 대표 또는 당해 작업 근로자의 위험성 평가 참여 혹은 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교육 등에 소요된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본다.(신설)</p>
<p>제11조(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p> <p>① 사업주는 제10조에 따라 위험성을 결정한 결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험성의 크기,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 및 다음 각 호의 순서를 고려하여 위험성 감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과 그 밖에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반영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험한 작업의 폐지·변경, 유해·위험물질 대체 등의 조치 또는 설계나 계획 단계에서 위험성을 제거 또는 저감하는 조치 2. 연동장치, 환기장치 설치 등의 공학적 대책 3. 사업장 작업절차서 정비 등의 관리적 대책 	

<p>4. 개인용 보호구의 사용</p> <p>② 사업주는 위험성 감소대책을 실행한 후 해당 공정 또는 작업의 위험성의 크기가 사전에 자체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범위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위험성이 자체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으로 내려오지 않는 경우에는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이 될 때까지 추가의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여야 한다.</p> <p>④ 사업주는 중대재해, 중대산업사고 또는 심각한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성으로서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행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잠정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p> <p>⑤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종료한 후 남아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에게 알려야 한다.</p>	<p>⑤ 사업주는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에 대한 내용과 위험성평가 종료 후 남아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에게 알려야 한다.</p>
---	--

5. 산재 보고와 재발 방지 계획 비치

- 현재 산재 보고 대상은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재해”로, 이는 2014년에 “사망자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재해”에서 변경된 것임. 개정 당시 산재 은폐로 악용될 가능성에 대해 여러 차례 비판과 우려가 있었음. 실제 일터에서 다친 노동자에게도 ‘휴업’을 하지 않도록 종용하고 산재로 보고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급여를 제공하는 산재 범위가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이므로 산업재해 발생 사안 모두를 보고하도록 한다는 측면에서도 보고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
- 또한, 현행 법으로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게 되어있는 ‘개선조치’를 당사자인 노동자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음. 노동자의 알 권리 측면이 박탈되었으며 개선조치가 사업장 현장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재해 재발 방지 계획을 사업장에 게시, 비치하도록 하는 개정이 필요함.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제안
<p>제4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 10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p>	<p>제4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본문 내용 수정)</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주가 법률 제11882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14년 7월 1일 이후 처음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명령을 받은 경우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이행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른 보고기한이 지난 후에 자진하여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p>	<p>⑤ 사업주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 중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해당 사업장에 게시·비치하여야 한다. (신설)</p>

<p>제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또는 법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주 2.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사업주 3.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사업주 4.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은폐하려고 한 사업주 <p>③ 사업주는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해(이하 "중대재해"라 한다)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팩스,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p>④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에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기재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가 없는 경우에는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제출할 수 있다.</p>	
---	--